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나211875(본소), 2019나211882(반소) 판결
[공사대금 ·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L (변경 전 상호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소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1. 28.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7가단26492(본소), 2019가 단111073(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21. 1. 2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주시 C아파트의 옥상 우레탄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 공사기간 2017. 3.

30.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7. 3. 30.부터 2017. 6. 10.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시방서대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7. 27. D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7. 6. 10.부터 2024. 6. 9.까지'인 하자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27. 41,400,000원, 2017. 5. 15. 40,000,000원, 2017. 7. 17. 33,000,000원 등 공사대금 11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 외에는 동일하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무관한 B이 원고의 명칭을 도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적격 없는 B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7. 2. 주주 전원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0. 2. 7.에 최형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 혹 발생한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일치로 동의하고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M는 2020. 8. 20. '이 사건의 제1심에 대하여는 2019. 1. 2.에, 항소심에 대하여는 2020. 2. 7.에 각 최형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위임계약 체결 절차에서 혹 발생한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도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실질적으로 당사자적격 없는 B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37,400,000원(= 약정 공사대금 151,8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1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57,895,000원,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가 훼손한 옥상 배관덮개에 대한 손해배상금 1,111,000원 합계 59,006,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20,606,000원²⁾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37,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6. 19. 피고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 ‘공사기간 2017. 3. 30.부터 2017. 6. 10.인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시방서대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을 제6호증의 2,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문서의 작성자란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 7. 27. D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7. 6. 10.부터 2024. 6. 9.까지’인 하자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항소심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N도 2017. 6.경 원고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 및 현재 존재하는 하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일부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7. 6. 10.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는 옥상 바닥에 대한 방수공사 외에 난간 벽체에 대한 방수공사도 포함되는데 난간 벽체에는 방수공사가 수행되지 않았고, 방수층의 두께는 3mm이어야 하는데 2.5mm로 시공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57,8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9, 11, 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 제1심감정인 O(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공사입찰계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옥상 바닥 4,120㎡에 3mm 두께의 우레탄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견적으로 공사대금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이 되었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옥상 난간 벽체의 걸레받이 부분에 방수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대신 옥상 바닥의 우레탄 두께를 3mm에서 2.5mm로 변경하여 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옥상 바닥 및 옥상 난간 벽체의 걸레받이 부분에 2.5mm 두께의 우레탄 방수공사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옥상 바닥에 들뜸(기포) 및 방수층 균열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2.5mm 우레탄 두께를 기준으로 한 보수비용은 3,615,000원인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동 옥상 바닥에 평균 2.5mm에 미치지 못하는 우레탄 방수공사가 수행되었는데 2.5mm 우레탄 두께를 기준으로 한 보수비용은 84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옥상 바닥 및 옥상 난간 벽체의 걸레받이 부분에 대한 2.5mm 두께의 우레탄 방수공사'로 변경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4,460,000원(= 3,615,000원 + 845,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4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이 57,89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감정인이 수정한 감정서의 오류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감정인은 2019. 3. 20.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률을 적용하여 감정서상의 위 손해배상액 57,895,000원을 24,979,00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옥상 바닥 및 난간 벽체 전체에 대한 3mm 두께의 우레탄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옥상 배관덮개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옥상 배관덮개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이 1,111,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11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옥상 배관덮개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7,400,00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460,000원은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공사 완료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의 채권은 32,940,000원(= 37,400,000원 - 4,460,000원) 남게 되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7.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동혁, 판사 김태현, 판사 이민영

1) 계약서에는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면 위 금액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양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의 채권이 21,606,000원(= 59,006,000원 - 37,400,000원) 남게 되는데, 피고는 20,606,000원을 구하고 있다.